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 지침

2024. 01.

한국디자인진흥원

목 차

I. 총칙		
1	사업 및 지침목적	1
2	사업 근거 및 추진경위	1
3	용어정의	1
4	운영주체별 역할 및 업무	2
II. 지원대상		
1	지원 대상 기업	3
2	지원 제외 기업	3
III. 지원요건		
1	기업요건	6
2	청년요건	7
IV. 지원내용		
1	지원기간	9
2	지원한도 및 채용계획의 변경	9
3	지원수준	10
4	지원요건	10
V. 지원절차		
1	참여신청	11
2	지원협약 체결	14
3	청년채용	15
4	지원금 신청 및 지급	16
5	고용안정지원금	17
6	사후관리	18
별첨		
	1.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1부	
	2. 청년연계 K디자인 과외업 사업 서식 1부	

I. 총칙

1. 사업 및 지침 목적

-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은 미취업 청년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경력형성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 실업을 완화하고 중소·중견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 구직 희망 청년 디자이너에게는 디자인 전문기업 및 디자인 활용기업에서의 인턴 기회 제공 및 양질의 취업 기회를 부여하고,
 - 기업에게는 인턴으로 채용한 청년 디자이너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 지침』은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동 사업이 현장에서 사업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통일성 있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5조, 제6조, 제9조, 제12조
 - * (제5조) 산업디자인의 육성·개발사업, (제6조) 우수디자인상품의 선정 등, (제9조)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지원, (제12조) 진흥원의 경비 지원
- 추진경위
 - 2016년 “산업 고부가가치화를 견인하는 디자인 혁신전략” 수립(8월)
 - 2019년 “디자인 주도 일자리 창출방안” 수립(9월)

3. 용어 정의

-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이하 “K디자인파워업사업”)이란 청년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등의 디자인일자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을 말한다.

- "참여기업"이란 K디자인과위업사업에 참여한 디자인전문기업, 중소·중견기업 등을 말한다.
- "인턴디자이너"란 상기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K디자인과위업사업 참여기간 동안 디자인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참여 청년을 말한다.
- "주관기관"이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K디자인과위업사업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사업주"란 고용보험 성립신고 적용 단위 사업주를 말하며, 개인 또는 법인이 될 수 있다.
- "사업장"이란 고용보험 성립신고 적용 개별 단위사업장을 말하며, 동일한 사업주 하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존재할 수 있다.

4. 운영주체별 역할 및 업무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 계획 수립, 지침의 제·개정 등 사업시행 전반 총괄·조정

□ 주관기관

- 기업 및 청년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 참여 희망 기업 및 청년 디자이너 발굴·모집
- 참여 희망 기업 및 청년 디자이너에 대한 상담 및 지원
- 참여기업의 신청 접수 및 그 적격 여부 확인
-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금 신청 접수 및 지급, 반환
- 참여기업에 대한 부정수급 조사·처분
-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 지침 등에서 정하는 사항 등

□ 참여기업

- 인턴 디자이너와 근로계약 체결
- 주관기관에 지원금 신청

II. 지원대상

1 지원대상 기업

1-1. 청년 디자이너 채용 희망 디자인 전문기업*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

**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근로자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는 피보험자 수에서 제외하며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함)

1-2. 사업 단위로 참여기업 적격 여부를 판단함

- 다만, 하나의 사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별도의 노무관리가 필요하고 고용보험이 구분되어 있는 등 사업장 단위로 동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 단위로 신청할 수 있음

<합리적인 경우 판단기준>

상기의 합리적인 경우라 함은 하나의 법인일지라도 지(점)사에서 독립적으로 ①해당 근로자와 지(점)사의 장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채용·해고 등의 인사권한을 가지고, ②수익의 주체가 지점으로 귀속되며, 인건비를 자체 수익으로 조달하는 등 인사·노무·회계 등이 사실상 분리된 경우에 한 함.

2 지원제외 기업

-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2-1. 소비·향락업 등 업종

-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부동산업, 일반유희 주점업, 무도유희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틱업, 무도장 운영업 등

②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다만, 숙박업 중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은 가능

2-2. 국가 및 공공기관 등

①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③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⑤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2-3. 임시·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2-4.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제외기간) 명단 공개기간 내에 신규 채용한 청년은 지원 불가

2-5. 기업의 부도 및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기업

2-6.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협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2-7.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2-8.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인 기업

2-9.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2-10. 신청서 등 제출서류가 불성실 작성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2-11.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주관기관이 K디자인 파워업 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기업

Ⅲ. 지원요건

1 기업 요건

- 1-1. 참여기업은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선정된 이후 아래의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을 채용하여야 한다.
- 1-2. 채용 청년의 직무는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디자인 관련 직무’여야 한다.
- 1-3. 참여기업은 사업 **공고일**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한다.

고용조정 이직

<고용보험 상실사유>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대분류)

✓ 23.(중분류)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①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②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③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 응해서, ④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⑤회사의 업종전환 적응하지 못해서, ⑥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 26.(중분류)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 해고 및 권고사직

③근로자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

1. 지원대상 청년

○ 아래 ①, ②, ③, ④를 모두 충족하여 선정된 채용자는 지원대상 청년에 해당된다.

① 공고일 기준 현재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②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취업 중인 자로 보는 경우

- ✓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 * 단, 일용근로자 및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는 제외
- ✓ 공고일 기준 직전 6개월 이내 해당 사업장에서 정규직 및 계약직으로 재직 했거나 하고 있는 자
-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기업은 채용한 청년이 채용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청년의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를 채용예정자 명단 통보 시 제출
 - *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③ 아래의 기준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

가. 디자인전공 대학(원)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 : 졸업까지 1학기 이하로 남은 휴학생 또는 수료자 포함

나. 디자인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

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제2조3항의 2. 나, 다에 해당하는 자 또는 디자인 산업기사, 기사 자격소지자

④ 근로조건 등

가. (근로계약) 지원기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나. (보험적용) 사회보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자

다. (임금수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

2. 지원제외 청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①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자
- ② 유사 인턴사업에 참여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 받는 자
- ③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 ④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⑤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자
- ⑥ 지원 연도 중 3회를 초과하여 반복 참여한 청년
- ⑦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재학 중이더라도 지원 가능한 경우

✓ 대학의 마지막 학기에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
(수료자 및 취업계를 낸 자 포함)

* 기업은 청년의 졸업예정증명서를 채용예정자 명단 통보 시 제출

- ⑧ 신규 채용 청년이 사실상 지원제외 업종(Ⅱ-2. 지원제외, 2-1. 소비·향락업 등 업종)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IV. 지원내용

1 지원기간

- 참여기업이 신청한 청년에 대해 **협약일로부터 당해 11. 30.까지 매 년 공고에서 지정하는 기간만큼 지원한다.**
- * 동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2 지원한도 및 채용계획 변경

- 2-1. 참여기업은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기업으로 **최대 2명의 상한**에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참여 신청할 수 있다.**
 - * 단, 디자인전문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제한 없이 최대 **2명의 상한**으로 채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은 해당 신청 내용을 평가하여 지원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 2-2. 선정된 참여기업이 **채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승인된 인원의 범위 내에서 주관기관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주관기관은 기업이 지원자가 포기하는 등 채용인원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업과 협의를 거쳐 인원을 조정하거나, 미채용 예상 인원만큼 다른 참여기업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 2-3. 참여기업이 승인받은 인원을 초과하여 채용한 인턴 디자이너에 대해서는 이 사업의 지원금 일체를 지급하지 않는다.
- 2-4. 주관기관은 예산 범위 내에서 참여기업의 채용예정자 명단 통보 승인 순으로 지원 인원을 결정하며, 주관기관의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참여기업이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3

지원수준

3-1. 지원대상 인턴 디자이너 1인당 지원금은 인건비로 기업 유형별 아래와 같은 비율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업 유형	지원금 지급액
디자인 전문기업	당해 정부고시 월 최저임금의 100%
중소·중견기업	당해 정부고시 월 최저임금의 80%

* 예산 소진 시까지

** 정부지원금은 기본급여, 월 퇴직급여충당금, 월 사회보험료(개인부담금)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인턴디자이너가 수령하는 실제 금액과 상이할 수 있음

3-2. 지원기간 중 인턴 디자이너가 이직한 경우 지원금은 출근일 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지원금 중복지원 제한) 기업이 인턴 디자이너를 고용하여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지원요건

4-1. 기업 당 최대 2명까지, 5개월 이내 기간 동안 지원 가능하다. (협약일로부터 당해 11월 30일까지 중)

4-2. 참여 기업은 채용 인턴 디자이너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당해 정부고시 월 최저임금 이상, 기업 부담 4대 보험료 제외

4-3. 참여 기업은 채용 인턴 디자이너에 대하여 4대 사회보험을 필수로 가입하여야 한다.

* 개인부담금은 정부지원금에 포함되어 있으며 회사부담금은 참여기업에서 부담

4-4. 참여 기업에 채용된 인턴 디자이너의 직무는 디자인 직무이어야 하며,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제출 시 인턴 디자이너의 수행업무 현황을 기재 하여서 매 익월 말까지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V. 지원절차

1 참여 신청

1.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 웹사이트 참여 신청

1-1 (신청방법)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주관기관이 운영하는 청년 인턴 지원 웹사이트(<https://intern.kidp.or.kr>)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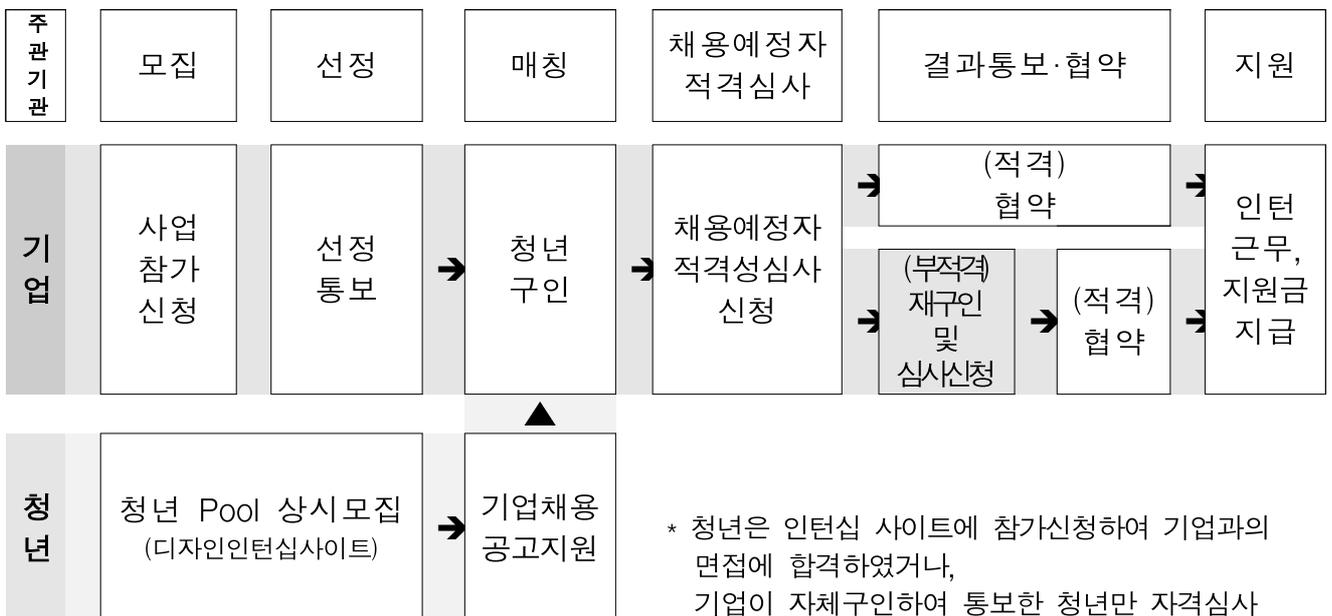
- 기업은 ▲ 유형별 구체적 직무내용, ▲ 유형별 채용예정 인원, ▲ 유형별 예상결과물 등을 사업 신청서에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한다.

* '기업 참가 신청서(서식 1-1)', '사업주 확인서(서식 1-2)', '청렴 서약서(서식(1-3))' 제출

1-2 (지원방식) 참여 기업 및 참여 희망 청년은 참가 신청서 작성하여 디자인 인턴십 사이트에 신청·등록

- 선정된 기업은 외부에서 자체적으로 구인하거나 인턴십 사이트 내에서 해당 기업 공고에 지원한 청년(기존 공모매칭 방식)을 면접 등의 방법으로 선발하여 주관기관에 채용예정통보서를 통해 청년 자격심사 요청
- 청년은 디자인인턴십 사이트에 참가 신청서 제출, 지원 기간 내 사이트 내 기업 공고에 합격한 경우 자격심사

1-3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다.



2. 적정성 평가 및 안내

2-1. (적정성 평가) 주관기관은 신청 기업 및 청년 디자이너의 정부 지원 적격 여부 및 적합성을 검토·확인한 후 신청 기업 및 청년 디자이너에게 적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2-2. (적정성 평가기준) 신청 기업 및 청년 디자이너의 적정성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다.

- 신청 기업 적격성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방법
기업현황	• 사업자등록증 명시 업종 및 업태의 제한여부	[] 예 [] 아니오
	• 기업유형 부적합 여부	[] 예 [] 아니오
재무현황	• ‘근로기준법’ 의거 임금 체불 여부	[] 예 [] 아니오
	• 세금 체납 여부	[] 예 [] 아니오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등록 여부	[] 예 [] 아니오
	• 자본전액잠식기업 여부	[] 예 [] 아니오
	•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 여부	[] 예 [] 아니오
기타사항	• 중대재해 발생 여부(‘산업안전보건법’)	[] 예 [] 아니오
	•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 여부	[] 예 [] 아니오

* 평가항목 중 ‘예’가 1개라도 표기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평가 직전 기업 신용정보 조회 실시 예정

- 신청 기업 적합성 평가기준

평가항목	내용	평가비중
인력활용계획	부여 디자인 직무의 수준, 수행업무의 내용, 디자인 사수 배치 유무 등	50
근로환경	배치부서, 교육훈련, 근무기간, 급여 및 복지 등	20
성과창출계획	인턴지원 성과창출계획, 정규전환계획 등	30

* 별도 가점사항이 있을 수 있음, 세부 내용은 당해 공고문 확인

- 청년 디자이너 적격성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지원제외조건	• 디자이너로서 업무 수행 역량이 현저히 낮은 경우 (포트폴리오 검토)
	• 공고일 기준 청년(만 19세 ~ 34세)이 아닌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취업 중인 자
	• 동일 사업장에 6개월 이내에 취업 이력이 있는자 또는 <u>동일 사업장에서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u>
	• 타 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지원 여부
	• 지원 연도 중 3회 초과 여부

* 평가방법 중 ‘예’가 1개라도 표기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서류 불성실 제출자의 경우 위원회 판단에 따라 부적격 처리 가능

2-3. (부정수급 예방 안내) 주관기관은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 신청 기업에 부정참여 시 지원금 환수 및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참가 기업 및 인턴 디자이너는 부정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원협약(주관기관-참가기업)

1-1 (협약체결) 주관기관은 참가기업이 제출한 기업 참가 신청서 등 관계 서류를 확인하고, 적격 여부 등을 심사한 후 당해 기업과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 지원협약을 체결한다.

- 지원협약은 참가기업의 당해연도 최초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 참여 시 체결하며, 지원협약일은 협약서를 체결한 날로 본다.

1-2. (협약내용)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 지원협약은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 표준 협약서(서식 3)'를 기초로 작성하되, 참여기업의 의무 및 책임, 약정 위반 시 제재사항, 지도·점검 상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3. (협약시 조건) 주관기관은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서류 등의 미비로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조건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 서류 보완 등 소정의 기일 내에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해지할 수 있다.

2. 협약 해지

2-1. 주관기관은 기업이 해당 지침 및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 지원협약을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해 지원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2-2. 기업도 주관기관이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 지원협약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협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상호 합의 하에 해지할 수 있다.

1. 매칭 및 채용

- 1-1. (상담) 주관기관은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 참여 청년 디자이너 및 참여 희망 청년에 대해 적성·진로 및 취업 희망직종 등에 대한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필요 인력의 전공·직무관련 자격 및 근무조건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 1-2. (매칭) 주관기관은 상담 결과에 따라 청년구직자 및 참여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청년 채용을 알선(매칭)할 수 있다.
- 1-3. (직접 채용) 참여기업은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직접 채용할 수 있다.

2. 채용예정자 명단 통보

- 2-1. (명단 제출) 참여기업은 지원대상 청년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예정자 명단을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채용예정자 명단 통보서(서식 2-1)’, ‘채용예정자 적격여부 확인서(서식 2-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청년용)(서식 4-1)’, ‘사업 관련 주요 안내 사항 동의서(청년용)(서식4-2)’, 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해당시) 졸업예정증명서 등 제출

- 2-2. (명단 확정) 주관기관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채용예정자를 심사한 후 참여 청년의 명단을 확정한다.

- 다만, 지원대상 청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는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하고, 사업주는 정해진 채용 기간 내에 보완 또는 재구인하여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3. 중도 퇴사자 명단 제출

- 참여기업은 지원대상 인턴 디자이너가 중도에 퇴사할 경우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주관기관에 조기종료 공문을 제출하여 통보해야 한다. 퇴사발생 1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차년도 사업 신청 시 고려할 수 있다.

4

지원금 신청 및 지급

1. 지원금 신청

- 1-1. (신청기한) 참여기업은 매 지원 월 청년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익월의 말일까지 주관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한다.(ex. 5월 급여 지급→ 6월 30일까지 지원금 신청등록) 지원금은 수 개월 분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없고 신청기한을 초과하여 예산이 소진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 1-2. (신청방법) 참여기업이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고, 지원금 신청 관련 증빙서류는 파일로 첨부하여야 한다.
- 1-3. (제출서류) 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서식 5),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 대장, 이체증빙 등),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내역서, 기업명의 통장 사본(최초 1회 신청 시에만)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2. 지원금 심사

- 2-1. (심사 및 지급) 주관기관은 참여기업으로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 기업 및 청년 여부, 청년의 재직여부, 임금 지급내역, 고용 보험료 체납 등 지원금 지급 요건을 검토하여 지원금 신청서 접수 마감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지원금 지급

- 3-1. (지급기한) 주관기관은 ‘기업 및 청년의 자격요건, 청년의 재직 여부, 기업의 인위적 감원 여부, 임금 지급내역, 수행업무 현황, 고용 보험료 체납 등’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 3-2. (지급방법) 지원금 지급은 기업의 계좌로 지급한다.
- 3-3. (지급제한) 참여신청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감원한 인원 수 만큼 지원대상자의 기업지원금을 중단*한다.

* 지원금 중단대상자는 ①감원일 기준 최근 채용자 등의 순으로 선정

4. 중복지원 제한

- 4-1. (중복지원 제한) 동일한 참여청년에 대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을 제외한다.

1. 고용안정지원금

- 주관기관은 청년 인턴의 이직, 조기종료 등으로 지원금 예산잔액이 발생 시 연중 별도 공고를 통해 이전 동 사업으로 지원받은 후 현재 까지 고용유지 중인 인력에 대해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신청 방법

- 전년도 지원 기업 대상으로 공지,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 시점 까지 증빙과 인턴 활용 성과사례 자료를 제출

3. 제출서류

- 해당 인력의 정규직 계약서류, 지원기간으로부터 고용안정지원금 공고 시점까지 근속 여부에 대한 증빙(고용보험 서류 등) 및 인턴활용 성과 사례자료를 증빙자료와 함께 신청한다.

4. 기타사항

- 고용안정지원금은 예산잔여 상황에 따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지원 기업 수 및 지원규모는 매 해 다를 수 있고 위원회를 통해 확정한다.
-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추후 성과사례조사 등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1. 서류관리 및 보존

- 주관기관은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참여기업 현황, 참여청년 인적사항, 기업지원금 지급내역, 사업비 집행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지도·점검

2-1. 주관기관의 현장지도·점검

가. 주관기관은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청년의 근무상황, 지원금 신청요령, 부정수급 예방, 청년근로조건 보호 등과 관련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반기 1회 이상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코로나19 확산방지 등을 위해 현장점검외 유선·서면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점검 가능

나. 현장지도·점검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되, 당해 연도 참여기업 중 자율매칭·공모매칭 기업을 각각 포함하여 실시하며,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 등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 주관기관은 참여기업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부정수급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현장지도·점검 시 확인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지원금 환수 등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2-2. 참여기업의 협조 의무

- 참여기업에 대한 현장지도·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은 그 사유와 일시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참여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이 사업주 및 인턴에 제공하는 **법정의무 교육, 디자인 교육 및 기타 교육**에 해당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참여기업은 해당 사업 참여성과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참여기업은 이 사업의 지침 또는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 지원 협약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하며, 제재부과금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4. 주관기관의 의무 및 역할

2-1. 주관기관의 의무

- 가. 주관기관은 배정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예산 소요 전망 등을 면밀히 추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나. 주관기관은 본 지침을 준수 하고,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2. 주관기관의 역할

- 가. (홍보 및 모집, 상담 및 자격 검토) 주관기관은 ▲청년 및 기업 등에 대한 사업안내 및 홍보, ▲기업·청년 발굴·모집, ▲기업·청년상담 및 채용 알선, ▲참여 신청 접수 및 적격 여부 확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나. (지원금 신청 접수 및 지급) 주관기관은 참여 기업이 주기별 지원금을 적기 신청하여 지원금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채용기업이 청년 채용 이후 매월 말일까지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한다.
- 다. (참여자 관리) 주관기관은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지원금 지원기간 중 인턴 디자이너의 근무상황 확인, 부정수급 모니터링, 현장지도·점검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별첨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시행 2021. 1. 1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5호, 2021. 1. 1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 044-203-423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디자인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를 위해 신고 자격의 세부기준, 신고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조사·분석·자문 등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② “전문분야“라 함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제품디자인, 환경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서비스디자인 분야 등을 말한다.

③ “전문인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 실무 경력은 산업디자인분야를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직무의 자격기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기술사(기능장)·기사 자격소지자

나.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다. 기능사 자격소지자로 4년 이상 실무 경력자

2. 학력기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디자인 전공자

1)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2)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1년 이상 실무 경력자

3) 전문학사 소지자로 3년 이상 실무 경력자

4) 특성화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 졸업자로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나. 준 전공자(일반미술학과)

1)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2) 전문학사 소지자로 4년 이상 실무 경력자

3) 특성화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 졸업자로 6년 이상 실무 경력자

다. 비 전공자

1)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3년 이상 실무 경력자

2) 전문학사 소지자로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3) 고등학교 졸업자로 7년 이상 실무 경력자

3. 기타기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 3에 따른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

나. 국내·외 디자인관련 공모전(전국단위)에서 10회 이상 서로 다른 출품 건으로 입선 이상을 수상한 자로 1년 이상 실무 경력자

다. 국내·외 디자인관련 공모전(전국단위)에서 5회 이상 서로 다른 출품 건으로 입선 이상을 수상한 자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자로서 10년 이상 실무 경력자

제2장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제3조(전문회사의 신고) ① 전문회사로 신고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전문회사의 신고 접수, 신고된 내용의 사실여부 확인 및 각종 확인서 발급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신고사항의 변경) ① 규칙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사항의 범위는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전문인력, 전문분야가 변경된 경우로 한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흥원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필증의 발급) ① 진흥원은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된 내용을 확인 후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신고필증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필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이를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요구로 열람을 하게한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장 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진흥원은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기업 현황을 관리하고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신고필증 발급 현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③ 진흥원은 신고를 필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제재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를 필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가 산업디자인진흥법령 및 이 요령이나 디자인보호법 등 산업디자인보호관련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다.

제4장 행정사항

제8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서식 1-1】 기업 참가 신청서	24
【서식 1-2】 사업주 확인서	25
【서식 1-3】 청렴 서약서	26
【서식 2-1】 채용 인턴 디자이너 통보서	27
【서식 2-2】 채용 인턴 디자이너 적격여부 확인서	28
【서식 3】 사업 지원 표준 협약서	29
【참고】 표준근로계약서	31
【서식 4-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청년용) ..	32
【서식 4-2】 사업 관련 주요 안내 사항 동의서(청년용)	33
【서식 5】 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34
【서식 6-1】 사업 참여기업 운영상황 점검표	35
【서식 6-2】 청년연계 K디자인파워업 참여 인턴 근무현황	35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기업 참가 신청서 (기업명)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 신청기업 정보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기업구분	<input type="checkbox"/> 디자인전문기업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중견기업		
업종		피보험자수	
소재지			
홈페이지			
2.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팩스번호)		이메일	
3. 인턴 채용 계획			
채용분야	<input type="checkbox"/> 제품디자인	<input type="checkbox"/> 명	채용 예정인원 (총 ___명) * 최대 2명
	<input type="checkbox"/> 시각디자인	<input type="checkbox"/> 명	
	<input type="checkbox"/> 디지털, 멀티미디어디자인	<input type="checkbox"/> 명	
	<input type="checkbox"/> 공간·환경디자인	<input type="checkbox"/> 명	
	<input type="checkbox"/>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input type="checkbox"/> 명	
	<input type="checkbox"/> 서비스·경험디자인(UI/UX 포함)	<input type="checkbox"/> 명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명	
구인방식(복수가능)	<input type="checkbox"/> KIDP 인턴십사이트 공고		<input type="checkbox"/> 외부 자율구인
희망근무기간	202 . . . ~ 202 . . .	근무장소	
희망근무시간	* 주40시간 계약 시 지원금도 해당 시간분만 지급, 주30시간 미만 채용 불가	월 급여	(세전) 원
수행직무	* 업무 포지션, 세부분야 기재(ex : 신규 서비스 UX디자인, 식품패키지디자인 등)		
배치부서		정규직 계획	유(명) / 무 / 미정
가점사항 (해당 시)	<input type="checkbox"/> 우수디자인전문회사 선정(2022~)		
	<input type="checkbox"/> 전년도 지원인턴 근속 중(인턴성명 및 생년)		

제출서류

1. 참가신청서 1부(필수)
2. 사업주 확인서 1부(필수)
3. 청렴 서약서 1부(필수)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필수)
5. 기타서류(압축하여 제출)
 - 4대보험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각 1부.(필수)
 - 그 외 우수디자인전문회사 선정증 및 기존지원인원 근속 증빙 등 가점관련 서류(선택)

위와 같이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 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디자인진흥원장 귀하

(계 속) 기업 참가 신청서 1/2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기업 참가 신청서 (기업명)

4. 인턴 활용계획

인력 **구인** · 활용
계획

- * 전체분량이 1장을 넘어갈 경우 기업소개자료 등 별지 붙임 같이 압축하여 제출 가능
- 기업 주요 비즈니스모델 소개
- 청년인턴 구인계획
- 청년인턴 직무부여 계획
 - 청년인턴에 부여할 디자인 직무내용을 상세히 계획
(주요업무, 참여 예정인 프로젝트 또는 과제 부여 계획, 업무 교육훈련 방안, 디자인 업무 사수 유무 등)

근로환경

- * 배치부서, 교육훈련, 근무기간, 급여 및 복지 등

성과창출계획

- * 채용 청년을 활용해 기업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 예상 결과물 기재

붙임문서 :

기업 참가 신청서 1/2

사업주 확인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필수 확인사항		
① (택1)	[디자인전문기업]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등록된 디자인기업	[]
	[중소·중견기업]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
②	소비·향락업, 근로자 공급업 및 근로자 파견업이 아닙니다.	확인 []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학교가 아닙니다.	확인 []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확인 []
⑤	직전 결산 해 기준 자본 전액잠식 기업이 아닙니다.	확인 []
⑥	고용보험료 체납기업이 아닙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된 경우는 가능	확인 []
⑦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이 아닙니다.	확인 []
⑧	사업 공고일 이후 고용조정으로 인위적 감원*이 없습니다. * 고용보험 전산 상 상실사유 코드가 23-①~⑥ 및 26-③인 것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인한 퇴사 등)	확인 []

본인은 위의 내용과 사업 지침의 지원제외 사업주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재무건전성의 확인을 위하여 신청기업 및 대표자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용상태를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에 []아니오

년 월 일

신청기업명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연락처 :

한국디자인진흥원장 귀하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 청렴 서약서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인(이하 “본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 ① 본인은 주관기관은 물론 누구에게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청탁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 ② 본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주관기관에 대해 일체의 금품, 향응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 ③ 본인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 ④ 본인은 주관기관으로 부터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단호히 거절할 것을 약속합니다.

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향후 사업선정 취소 등의 어떠한 불이익 처분이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명 :

신청인(대표자) : (인)

한국디자인진흥원장 귀하

채용예정자 통보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 청 기 업 현 황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기업구분	<input type="checkbox"/> 디자인전문기업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중견기업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업종		피보험자수	
담당자 정 보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채용인원 (* 최대 2명)		명		
배치부서				

	성명	생년월일	채용기간 시작일	채용기간 종료일	주 근무시간	월보수액 (최저임금이상)	채용방법
채 용 예 정 자 명 단		0000.00.00	00.00.00	00.00.00	월~금, 9:00~18:00 (40시간)		<input type="checkbox"/> 인턴십사이트 <input type="checkbox"/> 외부(자체)
	(직무/담당업무)						
		0000.00.00	00.00.00	00.00.00	월~금, 9:00~18:00 (40시간)		<input type="checkbox"/> 인턴십사이트 <input type="checkbox"/> 외부(자체)
	(직무/담당업무)						

위와 같이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디자인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붙임. [기업 작성] 채용예정자 적격여부 확인서 청년의 사이트 제출서류(기업이 확인 후 제출) 1. [청년 서류] 이력서 2. [청년 서류] 포트폴리오 3. [청년 서류] 최종학력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시) 4. [청년 서류] 개인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5. [청년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6. [청년 작성] 사업 주요 안내사항 동의서 7. [청년 서류]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	---

채용예정자 적격여부 확인서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 참여 자격 제한 해당 여부

지원제외 사항	해당안함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① 공고일 현재 청년(만 19세~34세 이하)이 아닌 자	[]
② 채용일 현재 취업중인 자 -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 계약직 등의 형태로 기존에 재직하고 있는 자, 사업등록증 소지자(폐업 등 효력 정지중인 경우 증명 필요) *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는 가능	[]
③ 동일한 사업장에서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
④ 다른 사업장에서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에 참여중인 자	[]
⑤ 지원연도 중 3회를 초과하여 반복 참여한 자(3회까지 허용)	[]
⑥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인 자	[]
⑦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⑧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자	[]
⑨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자 (단, 위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	[]
⑩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생인 자 (단, 대학교 졸업까지 1학기이하로 남은 졸업예정자는 가능)	[]

본인은 위의 내용과 사업 지침의 지원제외 근로자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에 []아니오

신청인(대표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한국디자인진흥원장 귀하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 지원 표준 협약서

기업명			
지원금	기업구분	<input type="checkbox"/> 디자인전문기업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중견기업	
	지원금(원)		
지원인턴1	성명		생년월일
	지원기간		
지원인턴2	성명		생년월일
	지원기간		

제1조(목적)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주관기관” 이라 한다)과 ○○기업(이하 “참여기업” 이라 한다)은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이하 “K디자인파워업사업” 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지원내용) ① 참여기업이 심사승인을 받은 후 채용한 청년에 대해 협약일로부터 최대 5개월간(최장 당해.11.30.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참여기업의 지원요건, 지원금액, 지원제한, 부정수급 시 제재 등은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지침(이하 “지침” 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선 채용 기업 지원) 주관기관은 채용예정자 명단 통보승인 순으로 지원 인원을 결정하며, 주관기관의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참여기업이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근로조건) ① 참여청년의 근로조건은 기업과 청년 당사자가 정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되, 지침에서 규정한 근로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참여청년과 상호합의로 근로계약서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나 지침에 반하는 계약은 체결할 수 없으며, 변경된 근로계약서는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참여청년의 직무) 참여기업은 채용계획으로 제출한 해당직무 및 디자인관련 직무 외 다른 직무에 참여청년을 활용할 수 없으며, 월 1회 수행업무현황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추후 현장점검 등을 통해 청년이 디자인 직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사업 지침에 따른 지원금 미지급 및 환수에 동의 협조한다.

제6조(협조의무) 주관기관은 참여기업에 지침에 근거한 자료제출 요구 또는 현장지도·점검(불시 포함)을 실시할 수 있고, 참여기업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인턴표준근로계약서(예시)

_____ (이하 “사업주” 라 함)과(와) _____ (이하 “근로자” 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인턴근무 ____년 ____월 ____일부터 ____년 ____월 ____일까지
 ※ 인턴 근로기간 종료 후 (내규/ 근무평가/ 협의)에 따라 정규직 전환
2. 근무장소 :
3. 업무의 내용
4. 소정근로시간 : __시 __분부터 __시 __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_____ 일 근무, 주휴일 매주 ____요일
 - 월(일, 시간)급 : _____ 원, 없음 ()
 - 임금 산정 기간 : 전월 ____일 ~ 당월 ____일
 - 상여금 : 있음 () _____ 원, 없음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없음 ()
 - _____ 원, _____ 원
 - _____ 원, _____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____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 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청년용)

1. 개인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참여기업이 채용한 청년의 지원대상요건 심사, 재정지원인턴십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 소관 재정지원 인턴십사업의 통합 정보전산망 관리 및 기존 정보전산망과의 연계,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인턴십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확인, 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의견수렴 및 추가 정책 안내 등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력·경력정보 및 졸업증명서	동의일로부터 5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 중앙부처, 한국디자인진흥원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참여기업이 채용한 청년의 지원대상요건 심사 등에 활용, 재정지원인턴십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 소관 재정지원 인턴십 사업의 통합 정보전산망 관리 및 기존 정보전산망과의 연계,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인턴십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확인, 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의견수렴 및 추가 정책 안내 등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참여기간, 지원금액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요건 확인 완료시까지(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참여기업이 채용한 청년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및 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의견수렴 및 추가 정책 안내 등에 활용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기업에 대한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년 월 일

한국디자인진흥원장 귀하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 관련 주요 안내 사항 동의서(청년용)

1.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을 통해 디자인 관련 직무에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며, 귀하를 채용한 기업에서는 **동 사업에 참여합니다.**
 - *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 관련 세부 내용은 intern.kidp.or.kr에 게시된 안내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
2. **동 사업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받는 당해 기간 동안 기업은 귀하를 동 사업 지침에서 규정하는 디자인 관련 직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 주관 기관에 매월 귀하의 디자인 직무 종사 여부 및 수행 직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귀하 및 기업의 담당자에게 디자인 직무관련 교육 또는 법정 의무교육을 수강하도록 할 수 있고, 현장점검 등 기업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기존에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인력은 동일 사업장에 재취업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상기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참여청년

(서명)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월)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 해당 서류는 디자인인턴십 사이트의 기업 계정에서 '지원금신청하기' 기능을 통해 제출

1. 참가기업 정보			
기업명		기업구분	<input type="checkbox"/> 디자인전문기업
대표자명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중견기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 용 보 험 사업장관리번호	
소 재 지			

2. 담당자 정보			
성 명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3. 수행업무현황	
인턴성명(서명)	월간 수행업무 내용
0 0 0 (서명)	* 각 인턴 별 근무내용 상세히 기술
0 0 0 (서명)	

4. 신청 내용				
성명 (생년월일)	채용일 (년 월 일)	신청회차	신청기간 (년 월 일 ~ 월 일)	신청금액 (원)
		/5개월		
		/5개월		
지원금 총 신청인원 () 명, 신청금액 () 원				

기업명의 계좌번호 () 은행 _____ (예금주 :)

인위적 감원 발생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	------------------------------

* 인위적 감원 발생 시 감원한 인원 수 만큼 지원이 중단되고 이후 추가채용에 대해 지원하지 않습니다.

첨부서류 : 임금이체증빙 및 급여명세서, 4대보험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1부.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디자인진흥원장 귀하

※ 매월 신청을 원칙으로 해당 월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단, 11월분은 12월2주차까지), 인턴서명 필수, 기한초과 시 지원금 수령이 불가할 수 있음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참가기업 운영상황 점검표

1. 참가기업 정보			
기업명		기업구분	<input type="checkbox"/> 디자인전문기업
대표자명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중견기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홈페이지			
업종		피보험자수	
전화번호		팩스번호	
운영현황	【관리책임자】 직위 : _____ 성명 : _____ 【배치부서명】 【디자인인턴십사업 참여인원】 _____ 명		

2. 운영현황					
채용예정인원 (A=B+E)	채용인원 (B=C+D)	참여중(C)	종료(D)	잔여인원 (E)	정규직 채용 및 전환
명	명	명	명	명	명
근무부서			근무장소		
수행업무 내용					

3. 주요 점검결과 * 주관기관 점검 담당이 작성	
점검사항	점검결과
1. 기업의 지원요건 적격 여부	
2. 청년의 지원요건 적격 여부	
3. 청년의 근로조건 적정성 및 디자인 직무 여부 ○ 근로시간, 임금수준,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 디자인 직무 재직 여부 등	

4. 점검자 종합의견

_____년 _____월 _____일

점검 참여자(기업)
기업(직위) : _____
성명 : _____ (서명 또는 인)

점검 담당자(주관기관)
기관명(직위) : _____
성명 : _____ (서명 또는 인)

한국디자인진흥원장 귀하

청년연계 K디자인파워업 참여 인턴 근무현황		
인턴 성명	생년월일	직무
주요 담당업무		
배치부서 및 업무분장에 대해 작성		
활동내역		
인턴의 근무현황(업무 및 근태 등) 자유작성		
주요성과		
인턴 참여 프로젝트 및 관련한 기업의 주요 업무실적 및 성과물 사진 등 포함하여 자유작성		